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자금 환급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의 시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로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을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말 조합의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부족한"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금 환급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합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1천분의 5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이하 "거액 대출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조합의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25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회계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제4절에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임의적립금"을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한다. 제7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중앙회장을 제외한다)은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부동산의 소유 제한) 중앙회는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95조제4항 중 "제83조,"를 "제78조의3, 제83조,"로, "제84조"를 "제83조의4, 제84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적용하고,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년 이후 적용한다.

제2조(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법정적립금 손실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제4조(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중앙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출된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혀 행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

개 정 안

- 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 · 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
 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
 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u>조합의 재산으로 그</u> <u>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u>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 할 때 <u>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u> <u>라 탈퇴하거나 제명된</u>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 · 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u>다만, 출자금 환급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지급의 시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 회계연도의 다</u>음 회계연도로 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말 조합의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금 환급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①			

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 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 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 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 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 으로 본다.

<신 설>

제49조(법정적립금) ① ~ ② (생략)

② 조합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1천분의 5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이하 "거액 대출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조합의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25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회계연도 말기준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한수 있다.

제49조(법정적립금) ① ~ ② (현 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손실금의 처리) ①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② (생략)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 요건) ① ~ ③ (생략)

<u><신 설></u>

<u>④ ~ ⑥</u> (생 략)

<신 설>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u>있다.</u>
제	52조(손실금의 처리) ①
	<u>D</u>
	의적립금, 법정적립금
	② (현행과 같음)
제	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
^ 'II	요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중앙
	회장을 제외한다)은 시·도 단
	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
	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
	<u>우 시·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u>
	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u>⑤ ~ ⑦</u> (현행 제4항에서 제6항
	과 같음)
제	<u> 78조의3(부동산의 소유 제한)</u>
	중앙회는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
	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
	유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4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	
여는 제6조제3항·제4항, 제39	
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	
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	
사·감독만 해당한다)·제5호,	
제78조제6항, <u>제83조</u> , 제83조의	제78조의3, 제83조,
2, 제83조의3, <u>제84조</u> , 제89조제	<u>제83조의4, 제84조</u>
3항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